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41
----------	------------

제안연월일 : 2017년 8월 31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기부식품 등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어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사업장 평가를 시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추어 ‘기부식품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중 제1호, 제2호).
- ‘식품등’을 ‘기부식품등’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2항 제4호)
- 안 제9조의2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2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 제5조 중 “식품등”을 각각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개정안 제9조의2를 삭제한다.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식품기부를”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로, “식품을”을 “식품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각각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5조 중 “식품”을 각각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부식품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식품기부 협조요청 등)”을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자”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로, “식품기부”를 “식품등의 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식품으로”를 “식품등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부식품제공”을 각각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 및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기부식품등-----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

- 기부식품등-----
-----.

1. 2. (현행과 같음)
3. 기부식품등의 -----

4. 기부식품등-----

제7조(실태조사) ① ----- 식품등

기부 -----
----- 식품등 기부 -----
-----.

② -----
----- 식품
등 기부 -----
-----.

제8조(보조금 지원) ① -----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
-----.

1. ----- 기부
식품등 제공사업-----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

2. 기부식품등-----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4. ----- 기부식품등 제공-----

② -----

-----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
----- 식품등 기부 -----

----- 식품등 기부-----.

②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
----- 식품등의 기부 -----.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

----- 식품

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
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
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
공사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
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
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
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
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서
울특별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
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기부 및

등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홍보) ① -----
----- 기부식품등 제공 -----
----- 기부식품등 제공 ----

-----.

② -----

----- 식
품등 기부 -----
-----.

③ ----- 식
품등 기부 -----.

제12조(포상) -----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
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